

# 거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31
----------	--------

제출일자 : 1999. 5 . 29.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개정 이유

-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완화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 쓰레기봉투판매업이 신고사항으로 완화됨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제20조 판매소의 지정 취소)의 삭제
- 제18조제1항에 봉투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 개정근거

- 행정규제사무의 정비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조제목 “판매소의 지정”을 “판매소의 신고”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를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로 하고, “지정”을 “신고수리”로 한다.

제18조 제1항 후단 “있다”를 “있으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공급을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
4.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20조 (판매소의 지정 취소)</b>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li> <li>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때</li> <li>4.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li> </ol>	<p><b>제20조 &lt;삭 제&gt;</b></p>